학교법인 연성학원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5인	0인

1. 일 시 : 2026년 2월 26일(목) 14:00~14:50 (회의소집 통보일 : 2026년 2월 13일)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회관 6층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 임원
   - 이사(5인) : 오금희, 이상희, 안정길, 곽동하, 윤재환
   - 감사(0인) :

   ◦ 결석 임원
   - 이사(3인) : 권재혁, 호우진, 염상욱
   - 감사(2인) : 이마빈, 이준범
4. 안건: (1) 연성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2) 연성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면직(안) 승인의 건.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연성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5. 회의 내용
   ◦ 간사는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후 이사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재로 본 이사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 이사의 호선에 의한 임시의장 선출이 필요함을 보고.
   ◦ 윤재환이사 : 오금희이사를 임시의장으로 동의.
   ◦ 곽동하이사 : 윤재환이사의 동의에 재청.
   ◦ 참석이사 : 전원 찬성.
   ◦ 오금희이사 : 본 이사회 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직을 수락.

(간서명 란)

이 사 윤재환 이 사 곽동하 이 사 이상희

(1) 연성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 의장 : 첫 번째 안건인 연성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을 상정하여 간사에게 설명을 지시.

◦ 간사 : (회의자료를 배포하고)이번 교원 신규임용에서는 총 15명의 전임교원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다년간에 걸쳐 강의경력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신임교수들을 초빙하였다고 설명.

◦ 의장 : 이사들의 심의를 요청.

◦ 참석이사 : 전원 찬성.

(2) 연성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면직(안) 심의

◦ 의장 : 연성대학교 교원 신규임용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연성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면직안을 상정하여 간사에게 설명을 지시.

◦ 간사 : 2026학년도부터 휴원 예정인 연성대학교부속유치원은 유치원장과 총5명의 교사가 면직 예정이라고 설명.

◦ 의장 : 이사들의 심의를 요청.

◦ 참석이사 : 전원 찬성.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심의

◦ 의장 : 연성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면직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하며 간사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

◦ 간사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추천위원으로 연성대학교 교원인 교수와 교수를 추천하려 한다고 설명.

◦ 의장 : 이사들의 심의를 요청.

◦ 참석이사 : 전원 찬성.

(4) 연성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심의

◦ 의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인 연성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며 간사에게 설명할 것을 지시.

(간서명 란)

이 사 윤 재 환 이 사 곽 동 하 이 사 이 상 희

◦ 간사 : 이번 개정안은 금연수당의 폐지가 주요사항임을 보고하고 해당 수당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은 성과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

◦ 의장 : 이사들의 심의를 요청.

◦ 참석이사 : 전원 찬성.

◦ 의장 : 연성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회회의록에 간서명 할 이사로서 이상희이사, 곽동하이사, 윤재환이사를 선정한 결과, 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이들 3인의 이사를 간서명자로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인사말씀과 함께 폐회를 선언.

위 사실을 확인함.

2026. 2. 26.

학교법인 연성학원 이 사 오 금 희 오금희

이 사 이 상 희 이상희

이 사 안 정 길 안정길

이 사 윤 재 환 윤재환

이 사 곽 동 하 곽동하

붙임 1. 연성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

2. 연성대학교부속유치원 교사 면직 대상자 명단

3. 연성대학교 보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이사회회의록의 비공개대상)에 의거 비공개

(붙임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이사회회의록의 비공개대상)에 의거 비공개

(붙임3)

보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 수 규 정>	**<보 수 규 정>**
제24조의2(금연수당) 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의 건강 및 쾌적한 교내환경을 위하여 금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05.27.> ② 지급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지침으로 정하며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지급액을 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05.27.>	<삭 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금연수당 지급분은 2026년 3월 중에 지급한다.

(간서명 란)

이 사 우재환 이 사 곽동하 이 사 이상희